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9
----------	-----

제출년월일 : 2020. 1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적극 감면
- 보훈 및 기타 법령 등에 의해 우리군 자연휴양림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 규정에 대한 정비를 추진
- 국가보훈처 등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과제 선정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 이행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조항 정비

- 제7조의 입장료 등의 감면에 대한 세부기준을 별표1의2와 같이 정한다.
- 제7조의 입장료 등의 감면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에 따라 제1항 각호의 감면 조항을 삭제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국가보훈법 외 관련법령 붙임1 첨부)

- 1)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우)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
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0.09.15. ~ 2020.10.0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의결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감면대상과 감면요율은 별표1의2와 같다.

별표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① <u>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1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u></p> <p>1. 면제 :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군민, 강원도명예도민, 출향강원도민, 숙박시설 또는 강당 등 유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p> <p>2. 할인 : 그린카드 소지한 사람, 강원도민, 휴양림과 제휴업체 이용객</p> <p>② (생 략)</p> <p>1. ~ 2. (생 략)</p> <p>③ (생 략)</p>	<p>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①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감면대상과 감면요율은 별표1의2와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②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별표1의2]

입장료의 감면기준

구분	감면대상	감면요율	비 고
입장료	평창군민 또는 강원도민, 강원도명예도민, 출향강원도민	요금의 100% 할인	※ 평창군민 - 평창군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 다자녀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
	숙박시설 또는 강당 등 유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각 실의 기준인원 적용)	요금의 100% 할인	
	그린카드 소지한 사람, 휴양림과 제휴업체 이용객	요금의 100% 할인	
	만6세 이하나 만65세 이상인 사람, 다자녀가정	요금의 100% 할인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국민 및 수행원, 외교사절단 등, 현장학습 등 교육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요금의 100% 할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요금의 100% 할인	
	「산림보호법」에 따른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요금의 100% 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요금의 100% 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요금의 100% 할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요금의 100% 할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요금의 100% 할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요금의 100% 할인	
	「특수입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따라 등록된 특수입무유공자와 그 유족	요금의 100% 할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요금의 100% 할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포로 가족	요금의 100% 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요금의 100% 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요금의 100% 할인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인 중 투표참여확인증 소지자	요금의 100% 할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 2항에 해당하는 자	요금의 100% 할인	
	기타 위와 유사한 사람으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 또는 평창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요금의 100% 할인	

비고

1. 입장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감면을 적용은 기간에 관계없이 [별표1]의 정상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법령 발취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 6. 21., 2017. 12. 29., 2018. 8. 14., 2018. 12. 31., 2020. 6. 2.>
 1. 국민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유공자(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 10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10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 10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14.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본조신설 2015. 12. 31.]

[붙임 2]

비용추계 미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침부 사유

- 이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산림과장
연락처	(033) 330-2450